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작가, 전 보건복지부 장관)

1. 국가의 진화

국가는 물리적 강제력(또는 폭력)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행사하는 유일한 인간공동체이다. 이것이 정치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국가의 정의(定義)다. 여기서 물리적 강제력은 국가가 당사자의 뜻에 반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힘과 능력을 가리킨다. 국가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번 소득의 일부를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아가며 사랑으로 키운 아들을 병영으로 데려간다. 법률이 금지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감옥에 가두며 심지어 죽이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폭력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지만, 그 실체는 결국 경찰과 군대가 보유한 폭력이다. 비상한 상황이 아니면 사람들은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에 저항하지 않는다. 국가와 힘으로 싸우는 것은 중국적으로 경찰과 군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어서 승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인간은 왜 국가를 만들었는가? 우리는 국가 없이도 살 수 있는가? 오늘날의 국가는 과거의 국가와 다른가? 만약 다르다면 그 변화는 왜 일어났으며 미래의 국가는 오늘의 국가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

하려면 국가의 발생사(發生史)를 살펴야 한다. 만약 인간이 어떤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국가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달라질 경우 국가의 성격과 기능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국가가 인간 욕구의 위계(位階, hierarchy)를 따라 진화한 끝에 오늘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최초의 국가폭력은 그저 폭력이었을 뿐이다. 뛰어난 완력과 지략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압도적 폭력을 구축했다. 지구행성의 모든 지역에서 국가는 노골적인 폭력을 동원한 정부와 대량학살을 거쳐 탄생했다. 그들은 복종하는 자에게 보상을 베풀고 저항하는 자에게 죽음을 내릴 힘을 과시해 민중의 복종을 얻어냄으로써 그 폭력을 합법화했다.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각자가 만인에 대해 늑대와 같이 투쟁하는 자연상태’보다는, 국가에 자연법적 권리를 양도하고 만민에게 똑같이 허용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편이 더 유리했기 때문에 국가폭력의 정당성을 승인했다.

발생 이후 수천 년 동안 국가는 외부침략과 사회 내부의 무질서를 막는 안보국가(安保國家)에 머물렀다. 그러나 오로지 폭력만으로 통치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초기단계 국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민중이 기꺼이 복종하게 할수록 국가는 더 오래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있었다. 국가가 민중의 지지와 자발적 복종을 지속적으로 획득하려면 안전보장을 넘어 물질적 생활수준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해주어야 했다. 국가는 점차 안보국가를 넘어 민중의 경제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 집중하는 발전국가(發展國家)로 진화했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위협을 느끼지 않고 어느 정도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고 나면 사람은 더 강하게 자유와 존엄을 원한다. 국가의 부속품이나 권력의 객체가 아니라 사회와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 것이다. 대중이 이런 욕구를 자각함으로써 국가는 안보국가와 발전국가를 넘어 민주국가로 이행했다.

국가가 처음 발생할 때 그랬던 것처럼 민주국가로 이행하는 시민혁명

과정에서도 유혈이 낭자한 폭력충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대중은 실업, 빈곤, 질병, 산업폐해, 소득 없는 노후와 같은 사회적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해주기를 국가에 요구했다. 그렇게 해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민주주의 정치체도를 가진 나라들이 먼저 복지국가로 진화했다.

2. 대한민국의 기원

서유럽 국가들이 안보국가 단계에서 발전국가를 거쳐 민주국가로 진화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같은 진화과정을 불과 몇 십 년으로 압축해버렸다. 정신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은 3·1독립투쟁 때 태어났다. 상해임시정부는 현장과 헌법에서 대한제국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천명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확고한 실체를 얻은 것은 한국전쟁 때였다.

박명림 교수의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에 따르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전에는 10만이었던 군대 규모가 60만으로 성장했고 경찰력도 단기간에 5만 명을 넘겼다. 바로 이것이 1961년 군사쿠데타와 뒤이은 30년간의 군부권위주의 통치를 부른 원인이었다. 결국 길게 보면 8년, 짧게 보면 3년에 불과했던 한국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사회 내부의 혼란을 방지하고 ‘북괴의 침략’을 막는 것을 국가의 절대적인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국민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역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평등권과 노동권은 법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통치권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북한 공산집단의 침략 위협과 북괴의 지령을 받는 친북용공세력이 야기하는 내부적 혼란’에 대한 실제적인 또는 조작된 대

중의 공포감을 이용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했다. 이런 공포감은 21세기 첫 10년이 다 지나간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들의 의식 저변에 짙게 배어 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 정부와 달리 국가주도형 계획경제를 도입해 안보국가의 토대 위에 자본주의 발전국가를 건설하려 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어 산업사회가 출현하자 새로 형성된 중산층과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노동권을 실제로 누리려고 했다. 지나간 민주화투쟁 끝에 찾아들었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민주국가로 진화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는 또 한 번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 극단적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의 삶은 예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다. 국민들은 비정규직, 정리해고, 빈부격차, 빈곤의 세습, 고령빈곤, 만성질병, 환경오염 등 더러는 익숙하고 더러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서 시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라고 국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3. 국가의 도덕적 이상과 헌법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국가가 훌륭한 국가인가? 개인을 중심에 두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인생은 없다. 그러나 국가는 다르다. 국가는 다른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다른 국민을 위해 자기 국민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국가를 중심에 두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 아니라 사회 내부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이 주제를 철학적, 신학적, 정치적으로 깊게 다룬 바 있다.

여기서 정의는 권리, 소득, 기회, 부, 권력, 명예 등 사람들이 원하는

최소한 것들을 자격 있는 사람이 받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정의 개념에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이 실현해야 할 도덕적 이상도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는 것이 정의로운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을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된다.

국가는 직접 행동하지 않는다. 실제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국가권을 가진 사람들,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려면 그들은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고, 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렇게 할 능력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다. 만약 신(神)이 있다면 신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신이 없다.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 종교와 세속권력이 하나가 되는 신정국가(神政國家)로 돌아간다. 마녀재판이라는 명목으로 부유한 독신녀의 재산을 강탈하고 신을 모독한다는 혐의로 과학자를 화형(火刑)에 처한 몇 백 년 전 유럽으로 회귀하거나,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오가는 시장 한복판에 폭탄을 터뜨리고 저항할 힘도 없는 이교도를 참수하는 자들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른 방법과 원칙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남루해 보이지만 그런 대로 쓸 만한 정의의 원칙을 세웠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았다. 비록 때로 남루해 보이지만 그 원칙을 세우기 위해 인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반란과 폭동, 학살, 내전(內戰), 혁명과 반(反)혁명을,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시신(屍身)이 산처럼 쌓이는 참극을 감내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과 방법을 문명국가의 헌법에 깊이 각인했다. 대한민국 헌법도 그렇다.

대한민국 헌법은 재산, 지위, 성별, 연령, 능력, 외모 등 그 어떤 차이가 있던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누구나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열거했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받아야 할 공직과 소득을 어떤 원리와 절차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지도 함께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이 정의를 실현하

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정의가 무엇인지, 국가로 하여금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면 그 어떤 철학자의 위대한 저서보다 먼저 헌법을 읽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는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나를 가두거나 처벌하지 못한다. 나를 고문할 수 없으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못한다. 법률에 따라 체포하는 경우에도 나는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백 말고 다른 증거가 없을 때 국가는 나를 처벌할 수 없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유로 나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나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살고 싶은 곳에 살아도 된다. 나는 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으며 남이 듣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통신할 수 있다. 양심에 따라 살면서 원하는 종교는 어느 것이든 믿을 수 있다. 믿기 싫으면 믿지 않아도 된다. 국가는 내게 특정한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말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고, 검열 없이 책을 낼 수 있으며,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다른 사람과 함께 단체를 만들거나 집회를 할 수 있다. 공부와 예술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서 30조까지의 내용이다.

이것은 모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며, 이 권리들을 묶어서 자유권적 기본권이라 한다. 1948년 제헌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대부분 담고 있었다. 그러나 1987년 6월 이전까지 국가를 장악한 권력자들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그때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없었다. 국가가 자유권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려고 본격 노력하기 시작한 것은 최초의 평화적 권력교체가 이루어졌던 1998년 2월부터였다. 그러나 역(逆)정권교체가 이루어진 2007년 2월 이후 우리는 이 권리

의 일부를 다시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유, 그 자체가 정의는 아니다. 자유가 있다고 정의가 수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유 없이 수립할 수 있는 정의는 없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받아야 마땅한 것은 자유 말고도 더 있다. 나에게서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할 권리도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보전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노동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묶어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헌법 31조에서 36조까지의 내용이다. 이것 역시 자유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속한다. 만민에게 이 권리를 실현해 준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정의를 수립할 수 없다.

공직, 소득, 부, 명예 등은 자격 있는 사람, 능력을 보여주었거나 크고 작은 기여, 공헌, 희생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마땅하다. 공직 또는 국가권력을 배분하는 원리는 경쟁이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시장, 도지사, 군수와 지방의원은 모두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41조, 67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40조).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거하지 않으면, 국가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 없다. 국가는 내 아이들을 군대에 데려가지 못한다. 나를 체포하거나 구금하지도 못한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없으면 국가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보다 훨씬 강하다. 국가폭력의 요체인 군대와 경찰을 지휘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대통령은 행정권을 가진 정부의 수반이다(66조). 대통령은 국가가 중대하고 긴급한 위난에 직면했을 때 법률과 같은 효력을 내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전쟁이나 그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와 사법부의 권능을 정지시키는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76, 77조).

선출공직을 배분하는 방법은 표를 많이 모으는 능력에 따르는 것이다. 좋은 섹션,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만약 선거가 완전히 자유로웠고 후보들이 법률이 금지한 반칙을 쓰지 않았으며 개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공직을 차지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정의로운 권력 배분 방법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사법과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도 경쟁으로 배분한다. 그런데 이 경쟁은 표가 아니라 지식이 지배한다. 시험 성적이 능력을 판단하는 완벽한 척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성적에 따른 공직 배분을 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소득과 부의 분배는 시장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세 가지 전체가 충족되었다면 시장경쟁을 통한 분배는 정의롭다고 간주할 수 있다. 첫째, 만인이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 하며, 자유롭고 동등한 주체로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경쟁의 규칙이 합리적이고 반칙을 배제해야 한다. 셋째, 승자와 패자의 보상 격차가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2015년의 대한민국이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 만인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경쟁규칙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국가는 반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루어진 시장경쟁의 승자와 패자가 받는 보상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4.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주의는 국가의 도덕적 이상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 정치시스템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권력의 제한과 분산, 상호견제와 감시, 주기적 공직선거 등 이른바 자유주의적 정치체도를 가진 민주국가이다. 이 체도로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정의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자유

주의 정치제도는 훌륭한 사람에게 권력을 맡기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단지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악을 마음껏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이러한 한계는 20세기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최저수준의 장점밖에 실현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다. 소수의견집단을 사실상 배제하는 선거제도, 지역으로 갈라진 정치지형과 유권자들의 불합리한 투표행태, 정경유착과 정치적 부패, 관료주의적 경직성, 정당의 취약성, 헌법정신에 대한 이해 부족, 언론의 부패와 횡포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가 악을 최소화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미덕과 선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하게 하려면 시민들이 더 훌륭해져야 하고 국정에 최대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천여 년 그리스에서 살았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펼친 이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정의가 짓밟히고 사회적 불의가 횡행한다면 그것은 종국적으로 주권자인 시민의 책임이며 그 피해도 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역시 없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상 가운데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적 인구구성의 변화이다.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국민 셋 가운데 하나가 65세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중대한 변화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연료의 고갈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핵발전은 일단 점화하고 나면 끝 방법이 없는 위험한 불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태양열과 지열, 풍력을 이용하는 ‘재생가능 에너지’는 생산비가 많이 든다. 최근의 유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주택과 산업 등 모든 면에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령화와 화석 에너지 고갈이라는 위기요인은 우리에게 거시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필요한 혁신을 제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가 민주적인 복지국가를 향한 진화경로를 순탄하게 밟아 나가려면 큰 틀의 정치사회적 혁신이 있어야 한다. 첫째, 시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회권적 기본권과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합리적 경쟁규칙을 정립함으로써 경제 권력을 분산하고 통제하며,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부당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넷째, 재벌과 같은 특수계급에 대한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공정거래법과 세법, 형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다섯째, 산업, 주택, 금융,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등 경제구조와 사회제도를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누가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위대한 지도자’를 기대할 수는 없다. 고령화와 에너지위기가 요구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은 산업화나 민주화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제이다. 각자의 욕망과 신념과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연민, 교감, 공감을 바탕으로 상호이해와 협력을 이루어야만 이 과제를 해낼 수 있다.

결국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다.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도 절망 속에 내버려두지 않는 국가,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게 하려면 우리들 각자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시민의 불복종』에서 한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하며,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기르는” 시민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나라에서 살 합당한 자격이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증오하거나 비하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행동이다. 우리는 모두 국가 안에서 국가와 관계를 맺으며 산다. 국가를 떠나서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훌륭한 국가 없이는 시민의 삶도 훌륭하기 어렵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도 국가를 대신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국가가 필요하다. 강력하고 능력 있는 국가 없이는 시민을 보호할 수도 정의를 수립할 수도 없다. 기업조직과 시민단체가 국가의 빈자리를 채우지는 못한다. 시민들 스스로 좋은 정당, 민주적인 정치,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